



제342회 임시회
2015. 9. 2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8월 24일
-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자활 기업의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향상,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활 활성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,
- 기금의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자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신설(안 제3조의2)
-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(안 제12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(안 제1조 등)

5. 검토의견

□ 조례안 제정 배경

- 자활기금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3에 따라 동 법에 명시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,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

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기금 운용의 행정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활담당 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임명토록 명시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한 것임.

□ 검토 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- 안 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)를 신설하여 충북지역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광역 및 지역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
- 본 조항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법리적, 내용적으로 타당함.

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

제26조의4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- 단, 보건복지부 「2015년 자활사업 안내」에 따르면,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활기금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, 이를 조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 - 현재 충북의 자활기금 조성총액은 2,550,242,085원이며, 2015년 지출현황을 보면, 비용자성사업 예산액이 77,000,000원으로 기금 총액의 3%수준으로 예산을 수립하였음. [별첨 참조]
 - 현재 자활기금 운용방식은 자금대여 사업의 경우 원금을 사용하되,

비용자성사업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, 현재 금융권 평균 예금금리가 2%미만이고, 2015년도 6월30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서 수령한 자활기금 이자율이 1.55%인 점을 감안할 때, 2015년도 지출 예산도 원금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임.

※ **충북도 통합관리기금(신한은행)-자활기금 지급 이자율 : 1.55%(2015. 6.30 기준)**

- 현 시점에서, 안 제3조의2에 추가로 명시된 아래 사업 등의 경우, 규모 있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데, 이와 관련해 사업비 확보를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.

※ **안 제3조의2 추가 지원 사업**

6.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
7.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
8.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

○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기금운용관(국장), 기금출납원(사무관)에 분임 기금운용관(과장)을 추가로 두도록 규정하였음.

- 이는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타당함.

- 단, 분임기금운용관은 필요한 경우에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, 현재 자활기금 운용현황을 보면, 융자금 6건, 비용자성 사업 4건, 전세자금대여 1건 수준으로 일부 사업이 추가되더라도 기금출납 건수가 많지 않은데, 분임기금운용관을 추가로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 [별첨 참조]

※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(기금의 수입과 지출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.

○ 그 밖에 오탈자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.

※ 별첨

충청북도 자활기금 현황

자활기금조성 현황(2015. 7. 31. 기준)

- 총 조성액 **2,550,242,085원**
 -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,575,770,000원
 - 정기예금(3건) 342,051,143원
 - 보통예금(1건) 152,420,942원
 - 용자금(8건) 480,000,000원

예치금 현황

| 구분 | | 대상 | 예치금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정기예금 | 정기예금예치(2015.02.27-2015.08.27 1.50%) | 200-202-520080 | 100,755,051 |
| | 정기예금예치(2015.05.07-2015.11.07 1.38%) | 200-206-141590 | 41,296,092 |
| | 정기예금예치(2015.06.04-2016.12.04 1.31%) | 200-207-508453 | 200,000,000 |
| 보통예금 | | 100-000-117660 | 152,420,942 |

용자금 현황

| 구분 | 채무자 | 기업및사업단명 | 용자일 | 용자기간 | 잔액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계 | | 6건 | | | 480,000,000 | |
| 보은군 | 보은지역자활센터 | 착한농부사업단 | 2010.10.14 | 10년(2020.10.14) | 70,000,000 | |
| 보은군 | 보은지역자활센터 | 정이품한우사업단 | 2010.12.22 | 10년(2020.12.22) | 50,000,000 | |
| 청원군 | 청원지역자활센터 | 우렁각시 | 2011.04.27 | 10년(2021.04.27) | 90,000,000 | |
| 괴산군 | 괴산지역자활센터 | 침구사업단 | 2011.04.27 | 10년(2021.04.27) | 70,000,000 | |
| 보은군 | 보은지역자활센터 | 보은제면 | 2012.04.30 | 10년(2022.04.30) | 100,000,000 | |
| 충청북도 | 충북광역자활협회 | 충북광역자활센터 | 2013.05.30 | 3년(2016.05.30) | 100,000,000 | |

2015년 지출 현황

| 구분 | | 예산액 | 집행액 | 잔액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계 | | 177,000,000 | 68,000,000 | 109,000,000 | |
| 비용자성사업 | 자활기업창업 및 생산품 마케팅 | 48,000,000 | 45,000,000 | 3,000,000 | |
| | 자활생산품 전시회 | 6,000,000 | 0 | 6,000,000 | |
| | 자활근로자 교육 | 16,000,000 | 16,000,000 | 0 | |
| | 자활사업 종사자 연찬회 | 7,000,000 | 7,000,000 | 0 | |
| 자금대여 | 전세 자금 대여 | 100,000,000 | | 100,000,000 | |